근골격계 질병 8종, 업무상 재해 추정의 원칙 적용

금속법률원 | 승인 2022.05.16 20:54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근골격계 질병 8종이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경우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 승인 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부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은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자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해당 내용을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 부위	근무기간 유효기간
직종	

경추간판탈출증 **목**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자동차(정비공), 용접공 등	
회전근개파열 **어깨**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등	
내(외)상과염 **팔꿈치**	**1년 이상** **2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등	
수근관증후군 **손·손목**	**2년 이상** **6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등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손·손목**	**5년 이상** **12개월 이내**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 급식조리원 등	
드퀘르벵 **손·손목**	**1년 이상** **2개월 이내**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조리원, 급식조리원 등	
요추간판탈출증 **허리**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제조업 용접공 등	
반월상연골파열 **무릎**	**5년 이상** **12개월 이내**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 제조업 용접공 등	

더욱 구체적인 고시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402523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공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지 1년 이내에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공단이 해당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할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의 원칙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 판단 절차를 일부 생략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명시하는 근무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판단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불과하던 내용을 고시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계의 반발로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등 당초 고용노동부의 개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경추간판탈출증이나 회전근개파열은 기존 근로복지공단 지침 상 근무기간보다 더 장기간 근무해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꾸준히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법률원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